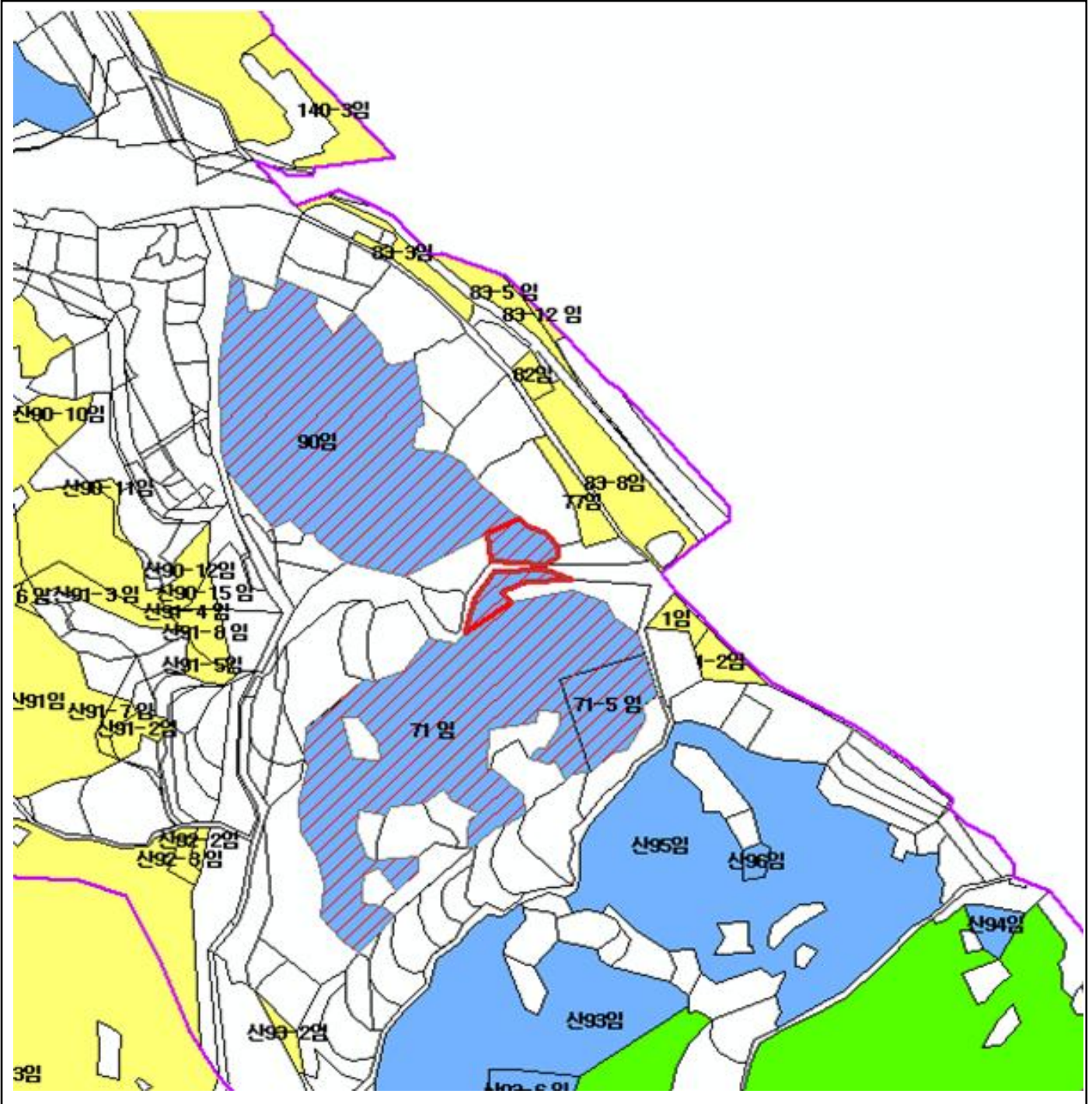


산지전용 · 일시사용 제한지역

[산지전용 · 일시사용 제한지역 해제]

NJ52-14-7-068



범례	
	지적선
	행정경계
	대상지역

지정권자 : 산림청장
 고시일자 : 2016년 11월 1일
 고시번호 : 산림청 고시 제2016-100호

- 비고 :
1. 축량의 기준 : 한국축지계
 2. 투영법 : 횡단 메르카토르도법(타원체는 베셀타원체)
 3. 높이의 기준 : 인천만의 평균해면
 4.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수치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
 5.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없이 복제, 국외반출, 임의개재, 편집을 할 수 없으며,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
 6. 본 지도에 의하여 축량할 수 없음



산지정보시스템(<http://www.forestland.go.kr>)
 산림청(<http://www.forest.go.kr>)